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원봉사 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7. 12. 13.

사회건설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17년 11월 13일

나.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17년 11월 17일

라. 상정일자 : 제205회 영등포구의회 2017년도 제2차 정례회
제5차 사회건설위원회(2017. 12. 5.)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복지국장 김인문)

가. 제안이유

- 상위법령인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상위법령의 위반소지를 없애고 구민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 및 단체의 자원봉사센터 등록의무 규정 삭제(안 제9조)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 권대광)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일부조항을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전문 일부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

○ 주요 개정 내용은

- 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5조, 안 제7조~제9조, 안 제11조, 안 제12조, 안 제14조, 안 제17조에서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정의”를 “뜻”으로,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기타”를 “그 밖에”로, “의하여”를 “따라”로 “당해”를 “해당” 등으로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 안 제7조제2항에서 센터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를 “3년으로 하며”로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에 따라 정비하였으며,
- 안 제9조제7항의 자원봉사활동 등록사항은 상위법에 근거가 없어 위반될 소지가 있으므로 해당 조항을 삭제하였음.

○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일부 조항을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한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원봉사 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299 호
----------	---------

제출연월일 : 2017. 11.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할 때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의무를 규정한 사항을 정비하여 구민의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 및 단체의 자원봉사센터 등록의무 규정 삭제(안 제9조)

나.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협의사항

1) 규제심사 : 신설·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

2) 부패영향평가 · 성별영향분석평가 · 인권영향평가 : 원안동의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2017.9.14. ~ 10.10. / 20일간) 결과 : 의견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원봉사 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원봉사 활동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를 “영등포구”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 다음 각호와”를 “뜻은 다음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라 함은”을 각각 “란”으로, 같은 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시민”을 “지역주민”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20인”을 “2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기타”를 “그 밖”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하되 연임 할 수 있으며”를 “하며”로 한다.

제8조제1호 중 “구 지역”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 지역”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민법 제40조”를 “「민법」 제40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1인”을 “1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는 20인”을 “제5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20명”으로, “과반수이상으”를 “과반수”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봉사자 또는 단체는 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1조제1항 전단 중 “의한”을 “따른”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2조 중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해”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등록단체”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과 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 법인·단체 등을 말한다.

제5조(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설치)

①구청장은 자원봉사 발전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시민의 자원봉사
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
하여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이하 “위
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략)
4. 자원봉사센터의 건의사항 및 기
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심
의·의결

③위원회는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
고 자원봉사활동에 전문지식과 경험
을 갖춘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
는 자 등 2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④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기타 필요
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센터 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①센터 장은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
는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
여 응모한 자 중 구청장이 선임하
며, 기타의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
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에서 센
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

따라 -----
-----.

제5조(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설치)

①-----

----- 지역주민-----
-----.

②-----.

1. ~ 3. (현행과 같음)
4. ----- 그 밖
에 -----

③-----

----- 20명 -----
-----.

④----- 그 밖에 -----
-----.

제7조(센터 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①-----

따라-----
----- 그 밖-----
----- 따라-----
-----.

② 센터 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으며 임기만료 30일 전까지 후임자를 선임토록 한다.

제8조(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구 지역의 기관, 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2. ~ 6. (생략)

제9조(센터의조직 및 운영 등) ①, ② (생략)

③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센터는 민법 제40조 또는 제43조의 기재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센터에는 소장 1인과 자원봉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된 사무국을 둔다.

⑤ (생략)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는 20인 이하로 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이상으로 구성하고 대표는 민간인으로 한다.

⑦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봉사자 또는 단체는 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 하며 -----

-----.

제8조(센터의 사업)-----
-----.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 지역--
2. ~ 6. (현행과 같음)

제9조(센터의조직 및 운영 등)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
----- 「민법」 제40조 -----

④ ----- 1명-----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5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20명 -----
--- 과반수-----
-----.

<삭제>

⑧ 기타 센터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① 센터는 제10조에 의한 지원을 받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당해 회계연도 개시 3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③ (생략)

제12조(자원봉사단체의 지원) 구청장은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구청장 및 자원봉사단체 등은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 5. (생략)

제17조(보험가입) ① 구청장은 센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⑧ 그 밖에 -----
-----.

제11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① ----- 따른 -----
----- 해당 -----
----- . -----
----- .

②,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자원봉사단체의 지원)-----
----- 「비영리민
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
----- .

제14조(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

----- .

1. ~ 5. (현행과 같음)

제17조(보험가입) ① -----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에 보험 또는 공제가입의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센터는 센터등록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구청장에 일괄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신청하여야 하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단체는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구청장에 일괄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2. (생략)

3. 구청장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등록단체의 소속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센터는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기타 보험 또는 공제가입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

②제1항에 따라 -----

-----.

1. -----

-----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

-----.

2. (현행과 같음)

3.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

③그 밖에 -----
-----.